

## 집합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아리 멀티 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 호
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:

- 2021 년 2 월 9 일 공포/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적용
- 운용사 성과보수 조정
- 책임운용역 변경
- 설정청구일 변경
- 환매청구일 변경

3. 약관변경 시행일: 2021 년 4 월 16 일

4. 약관변경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</p> <p>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투자자로서 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li> <li>2. <b>1 억원</b>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li> </ol>	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</p> <p>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투자자로서 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li> <li>2. <b>3 억원</b>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li> </ol>

**제18조(수익증권의 판매)**

-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③ 고객은 매주 월요일(이하 “설정청구일”이라 한다)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설정청구를 할 수 있다. 설정청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포함 60일간은 매 영업일에 설정이 가능하다.

④ <생략>

<생략> <현행과 동일>

**제18조(수익증권의 판매)**

-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③ 고객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설정청구를 할 수 있다.

④ <현행과 동일>

**제21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**

- ① 수익자는 매주 월요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 한다) 15시30분까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(이하 “환매청구일”이라 한다). 환매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말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)로 한다.

② <생략>

- ③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T+3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(T+4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본 항에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

**제21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**

-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청구를 할 수 있으며 15시30분까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(이하 “환매청구일”이라 한다). 환매청구일에 대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하고 매년 12월말은 한국 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)로 한다.

② <현행과 동일>

- ③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T+2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(T+3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본 항에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하고

<p>12월은 한국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)로 한다.</p> <p>④ &lt;생략&gt;</p> <p>⑤ &lt;생략&gt;</p>	<p>매년 12월은 한국거래소의 최종개장일을 최종영업일로 한다)로 한다.</p> <p>④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⑤&lt;현행과 동일&gt;</p>
<p><b>제32조의2 (성과보수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1. 성과보수계산기간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2. 성과보수금액 및 계산방법 &lt;생략&gt; (하이워터 15%)</p>	<p><b>제32조의2 (성과보수)</b></p> <p>①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1. 성과보수계산기간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2. 성과보수금액 및 계산방법</p> <p>가. 초과수익금액 :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-Hurdle 금액</p> <p>나. Hurdle금액 : 취득가액 x (1+Hurdle Rate)</p> <p>다. Hurdle Rate : 연 7%</p> <p>라. 성과보수금액 : Max[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, 0]</p> <p>마. 성과보수율 : 15%</p> <p>바.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: 해당일 현재 좌수 x 해당일에 계산된 1좌당 결산시 적용되는 기준가격. 다만,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[환매좌수 x 1좌 당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]</p> <p>사. 취득가액 : 각 수익자별 최초 수익증권 매입가격 또는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</p> <p>아. 회계연도 초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:</p>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일 현재좌수(해당일 재투자좌수 포함) x 해당일에 적용되는 1좌당 기준가격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32조의2 (성과보수)</b> &lt;생략&gt; ⑥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. 1.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사항</p> <table border="0"> <thead> <tr> <th>성명</th> <th>직위</th> <th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서명찬</td> <td>주식운용본부장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코리아에셋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 차장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과장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키움자산운용 주식운용팀 과장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맥투자자문 주식운용팀 과장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한화증권 투자전략팀 Quant담당</td> </tr> <tr> <td>성준모</td> <td>차장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현 아라자산운용</td> </tr> <tr> <td>심재용</td> <td>대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현 아라자산운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성명	직위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서명찬	주식운용본부장		-		코리아에셋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 차장	-		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과장	-		키움자산운용 주식운용팀 과장	-		맥투자자문 주식운용팀 과장	-		한화증권 투자전략팀 Quant담당	성준모	차장		-		현 아라자산운용	심재용	대리		-		현 아라자산운용	<p><b>제32조의2 (성과보수)</b> &lt;생략&gt; ⑥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. 1.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사항</p> <table border="0"> <thead> <tr> <th>성명</th> <th>직위</th> <th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김재현</td> <td>전무이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신한금융투자 Equity파생부 부서장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신한금융투자 주식선물운용부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신한금융투자 PI부</td> </tr> <tr> <td>성준모</td> <td>차장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</td> <td>현 아라자산운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성명	직위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김재현	전무이사		-		신한금융투자 Equity파생부 부서장	-		신한금융투자 주식선물운용부	-		신한금융투자 PI부	성준모	차장		-		현 아라자산운용
성명	직위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명찬	주식운용본부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코리아에셋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 차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과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키움자산운용 주식운용팀 과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맥투자자문 주식운용팀 과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한화증권 투자전략팀 Quant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준모	차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현 아라자산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재용	대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현 아라자산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명	직위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김재현	전무이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신한금융투자 Equity파생부 부서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신한금융투자 주식선물운용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신한금융투자 PI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준모	차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	현 아라자산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5. 수익자 동의

위 집합투자규약 개정에 동의합니다

수익자: (인)